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7
----------	-----

제출년월일 : 2005년 3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감면대상인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용면적 60㎡~148㎡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감면하도록 개정함 (2004. 12. 3. 경제장관회의 결정)
- 도시가스도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공급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2000년말 개정하여 200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토록 하였으나,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2007년까지 납부할 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규정 신설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에 대한 보철용자동차의 감면요건 강화하고, 지방세법 등 법률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조문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지방세법에 일치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감면대상인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용면적 60㎡~148㎡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감면하도록 개정함 (제11조)

※ 감면대상자 확대 : 임대사업자 감면 ⇒ 임대사업자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면율 확대 : 40㎡이하 및 60㎡ ⇒ 현행과 같음.
 85㎡이하 초과누진세율 적용배제 ⇒ 149㎡이하 25% 감면

나.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함 (제27조의2 신설)

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본인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

로 감면요건 강화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 배우자가 본인과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도 감면하던 것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 함.

라.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1996년도 개정 시행됨에 따라, 1999년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토록 하였으나,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납부할 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규정 신설(제15조의 3)

마.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제2조 제2항)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감면규정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세부적으로 개정함.(제22조)

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중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주택이 별도 과세대상으로 됨에 따른 자구 수정 및 관련법률 중 명칭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여 일치시킴.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1조)

3. 근 거 법 령 : 지방세법(붙임)

4. 의 안 전 문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첨부: 1. 기타참고자료(준칙안) 4부
2. 입법예고(사본) 3부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산세 ·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며, 동조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 · 비속, 국가 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 · 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의 본인 ·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장애인의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6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7조중 “재산세 ·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재산세 ·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축물로서”

를 “건물 및 주택으로서”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를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제1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4조중 “1000분의 3을”을 “1000분의 1.5를”로 한다.

제15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를 “재산세의”로 한다.

제15조의1중 “제194조의14제2항”을 “제131조의2제2항”으로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재산세·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5조의2 본문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법 제10조”를 “동법 제9조”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제1항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를 “재산세”로 하고, 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한다.

제17조본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종합토지세과세 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8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9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한다.

제20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1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

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위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3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24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5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를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로 하며, “주거용건축물”을 “주택”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에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대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9조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u>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를 면제한다</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 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 _____ _____ <u>재산세</u> _____ _____ _____ _____ <u>재산세</u> _____</p> <p>② _____,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_____ .</p>

현 행	개 정 안
1.~ 4. (생략) ③ (생략)	1.~ 4.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u>장애인 본인</u>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4. (생략) ② (생략)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u>장애인 본인</u>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 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_____ _____ _____ _____ 재산세를 _____ _____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_____ _____ _____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_____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생 략)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_____ _____ 재산세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7. (현행과 같음)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 1. (생 략)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생 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_____ 재산세 _____ 1. (현행과 같음) 2. _____ 건물 및 주택으로서 _____ 3. (현행과 같음) ② _____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3. (생 략)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 —— 재산세를 —————. 1.~3. (현행과 같음)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 —— —— ——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 —— 재산세를 —————.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 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 행	개 정 약
<p>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p>	<p>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현 행	개 정 안
<신설>	<p>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p> <p>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p> <p>①-----</p> <p>-----</p> <p style="text-align: right;">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p> <p>-----</p> <p style="text-align: right;">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 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 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 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 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 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재산세의 100분의 50</u> <u>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u> <u>의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u> <u>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③ _____</p> <p>_____</p> <p style="text-align: right;"><u>재산세의 100분의 50</u></p> <p>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 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 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 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 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 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 는 날부터 3년간 <u>1,000분의 3을 적용한다.</u></p>	<p>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p> <p>_____</p> <p style="text-align: right;"><u>1,000분의 3을</u></p>
<p>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 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 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u>종합토지세 과세</u> <u>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 style="text-align: right;"><u>재산세의</u></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1(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재산세</u> · <u>종합토지세</u> · <u>도시계획세</u>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u>재산세</u> · <u>종합토지세</u> · <u>도시계획세</u>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추징한다.</p>	<p>제15조의1(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p> <hr/> <p>제131조의2제2항</p> <hr/> <p><u>재산세</u> · <u>도시계획세</u></p> <hr/> <hr/> <hr/> <hr/> <hr/> <hr/> <hr/> <hr/> <hr/> <p>-<u>재산세</u> · <u>도시계획세</u></p> <hr/> <hr/> <hr/> <hr/>
<p>제15조의2(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종합토지세</u>와 <u>도시계획세</u>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 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p>제15조의2(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p> <hr/> <p><u>재산세</u>와</p> <hr/> <hr/> <hr/> <hr/> <hr/> <hr/> <hr/> <hr/>

현 행	개 정 안
<p>1. ~ 2 (생 략)</p> <p>3.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u>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u>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격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_____ 「<u>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 _____</p> <p>_____ 제9조 _____ _____ _____ _____</p>
(신 설)	<p><u>제15조의3(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u></p> <p>1. 「<u>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u>」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p> <p>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p>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_____</p> <p>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재산세 _____</p>

현 행	개 정 안
<p>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p>	<p>② _____ _____ , _____ _____ _____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_____ _____ .</p>
<p>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u></p> <p>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2 (생 략)</p>	<p>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_____ _____ _____ <u>재산세</u> _____ .</p> <p>1. _____ _____ _____ _____ 재산세의 _____ .</p> <p>2 (현행과 같음)</p>
<p>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u>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재산세 _____ _____ _____ .</p>

112 【제110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u>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u> _____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u>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재산세</u> _____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_____ _____ _____ <u>재산세</u> _____
<u><신 설 ></u>	제21조의2(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세)</u> 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u>사업소세(종업원할)</u> 를 면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p><u>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u></p> <p><u>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제3호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u></p> <p><u>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 제4호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날</u></p>	<p><u>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u></p> <p><u>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학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 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u>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학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3호 <u>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u></p> <p>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4호 <u>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u></p>
<p>제2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 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각각 3년간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2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 ————— —————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2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 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 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u> 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p>	<p>제2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 ————— ————— <u>재산세를</u> ————— —————</p>

현 행	개 정 안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u>재산세</u> 와 <u>종합토지세</u> 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_____ _____ _____ _____ —재산세— _____ _____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u>재산세</u> 와 <u>종합토지세</u> 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_____ _____ _____ _____ —재산세— _____ _____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u>재산세</u> 와 <u>종합토지세</u> 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재산세— _____ _____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 를 면제한다.	제2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 ————— ————— ————— 재산세————— ————— .
제27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 —————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 . ②————— 주택————— ————— —————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주택————— ————— .
(신설)	제27조의2(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8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두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대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 토지에 대한 재산세————— ————— ————— ————— .

□ 관계법령

지방세법

[법률 제07332호, 2005.1.5.]

第1章 總則

第7條 (公益等 事由로 因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①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因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因하여 必要한 때에는 不均一課稅를 할 수 있다.

第9條 (課稅免除等을 爲한 條例)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當該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定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8.12.31>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00213호, 2003.12.31.]

제2조 (과세면제등 허가신청<개정 1988.5.7>)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조례안, 관련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사업수지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면제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세목 및 세율
3.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방법
4. 과세면제등의 기간 및 그 사유
5. 과세면제등에 의한 세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요약

【 참고 】

조항	구분	현 행	개 정
제2조 제1항	표준안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2조 제2항	준칙안	•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제3조 제1항	준칙안	• 배우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제4조	표준안	• 음성나환자촌지원 • 주거용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 하의 것에 한한다)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한세정착농원지원 •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것에 한한다) • 재산세
제5조	표준안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6조	표준안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을 경감	• 삭제
제7조	표준안	• 재산세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9조 제1항	표준안	• 재산세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9조 제1항2호	표준안	• 건축물	• 건축물 및 주택
제9조 제2항	표준안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을 경감	• 삭제
제10조 제1항, 제2항	표준안	•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 물 취득후 • 건축물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 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 주택 • 재산세

조항	구분	현 행	개 정
제11조	준칙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및 매입임대 동조에 규정 - 40m²이하 : 재산세, 종토세 면제 - 40~60m² : 재산세 50%, 종토세 0.3% - 60~85m² : 종토세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임대(1항)과 매입임대(2항) 별도규정 - 건설임대 : 60~149m²까지 감면 확대 (재산세 25%감면) - 매입임대 : 60~85m²까지 감면 확대(재산세 25%감면)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도시계획세 면제 * 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 세부규정은 시행 공문 참고
제12조 제1항, 제2항	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제12조 제3항	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 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
제14조	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1,000분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1,000분의 1.5
제15조	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의
제15조의1	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시행령194조의14제2항 • 재산세·종합토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 • 재산세
제15조의2	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제9조
제15조의3	준칙안	<p>< 신 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차 동차에 대한 감면
제16조 제1항	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의
제16조 제2항	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100분의50%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제17조	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 재산세의

조항	구분	현 행	개 정
제18조	표준안	• 재산세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19조	표준안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 삭제
제20조	표준안	• 재산세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21조의2	표준안	< 신 설 >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제22조	표준안	• 재산세종합토지세	• 재산세 • 감면규정 세분화
제23조	표준안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 삭제
제24조	표준안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25조	표준안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27조 제1항	표준안	•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에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1	•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0.7
제27조 제2항	표준안	•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에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3	•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2
제27조의2	준칙안	< 신 설 >	•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28조	준칙안	< 신 설 >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입법예고결과보고 및 개정조례표준안(사본)

1. 2004. 12. 27. 입법예고----- 30
2. 2005. 1. 6. 입법예고----- 47
3. 2005. 2. 3. 입법예고----- 55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2005. 1. 21.

담당자	담당	과장	결재
이수미	이수미	이수미	이수미

1. 조례명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04.12. 27 ~ 2005. 1. 18(21일간)

3. 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4. 조례개정안 요목

가. 충북 세무회계과 준칙안 시달 : 2004.8.31.

- (안 제2조 제2항)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자구 수정

나. 충북 세무회계과 준칙안 시달 : 2004.11.3.

- (안 제2조) 「국가유공자 등」의 정리로 조문 간결화
- (안 제3조) 장애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에 같이 기재되도록 요건 강화
- (안 제28조) 종토세 경감규정을 신설

다. 충북 세무회계과 준칙안 시달 : 2004.12.22.

- (안 제15조의3 신설)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5.1.1 ~ 2007.12.31까지 경감기간 연장 및 자동차 경감율 규정

5. 입법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끝.

입법예고

제천시공고 제 2004 - 752호

제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2. 27.

제 천 시 장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례명 : 제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법률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리 및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에 대한 보철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요건 강화
-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2000년말 개정하여 200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 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토록 하였으나,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 차세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2007년까지 납부할 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규정 신설(제15 조의 3)

□ 주요개정내용

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 함(제2조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본인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감면요건 강화 (제2조 제2 항, 제3조 제1항)

* 배우자가 본인과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도 감면하던 것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 함.

- 다.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1996년도 개정 시행됨에 따라 1999년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토록 하였으나,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납부할 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규정 신설 (제15조의 3)
- 라.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감면세액산정방식을 명확히 함 (보칙신설 제32조의 2)

□ 의견제출

이 제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월 18일 까지 제천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번호 전화640-5261, FAX 640-525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준칙안】

신나게! 힘차게! 빛나게!



충 청 북 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안 통보

- 행정자치부 세제과-1649(2004.8.27)호와 관련입니다.
- 법률명칭변경("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및 위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취득하는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안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갈음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수신자 D01-12(세정업무관련과장)

★지방세무조사보 신승민 자방행정사무관 윤기관 세무회계과장 전결8/31

신원호

협조자

시행 세무회계과-13106 (2004.08.31.) 접수 세정과-12255 (2004.09.01.)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114 / 전송 043) 220-2777 / test@cb21.net / 공개

○○도○○시 · 군세감면조례(안) 개정조례

○○도○○시 · 군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나게! 힘차게! 빛나게!



충 청 북 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과-2271 (2004.10.28)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시군세감면조례 내용중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불임과 같이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통보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갈음하여 금년말까지 시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2005.1.1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군에서는 조례개정 일자와 개정현황을 2004.12.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감면조례표준안 개정내용 1부
 3. 행정자치부 공문 사본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수신자 더01-12(세정업무관련과장)

★지방세무주사보 신승민 지방행정사무관 윤기관 세무회계과장 신원호 자치행정국장 11/3 김재록

협조자 지방세무주사 이홍신

시행 세무회계과-16963 (2004.11.03.) 접수 세정과-15714 (2004.11.04.)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114 /전송 043) 220-2777 / test@cb21.net / 공개

00도00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00시 · 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로 하고,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를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로 하면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을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으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를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을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으로 각각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의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장애인의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6장 보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0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대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00도00시 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에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u>고엽제후유의증환자</u>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후단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u>고엽제후유의증환자</u>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현행과같음)</p>

현 행	개 정
<p>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후단생략)</p> <p>제6장 보 칙 〈신 설〉</p>	<p>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_____ _____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_____ _____ _____ _____ 하여 (현행과 같음)</p> <p>제6장 보 칙 제00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 준액에 대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 을 경감한다</p>

‘05년시행 감면조례표준안 개정내용

□ 그간 추진경위

- ‘04. 4월 ~ 7월 : 개정계획 수립 및 개정의견 수렴(중앙·지방)
- ‘04. 7.14 ~ 7.16 : 시도·시군 감면조례담당자 합동토론회 개최
- ‘04. 9월 ~ 10월 : 1차 토론회에 대한 추가의견 수렴

□ 개정내용

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 명확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자동차세 면제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
○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	

< 개정사유 >

-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 부여

2. 국가유공자 등 감면조항 문구 정리

현 행	개 정 안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증환자” 직계 존·비속 -----	“국가유공자 등”的 직계 존· 비속 -----

< 개정사유 >

- “국가유공자 ·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간결화

3. 종토세 감면방식의 구체적 명시

현 행	개 정 안
종토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종토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표 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명시

< 개정사유 >

- 시 · 군세 및 구세감면조례 일부조항에서는 종토세 감면방식을 특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명확화 필요

□ 시군 조치사항

- 시군별 개정사항 도청 세무회계과 제출 : '04.12.20까지
- 자치단체별 입법예고 및 의회의결 · 공포 : '04.12.31까지
- 시행 : 2005. 1. 1부터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험조

(경유)

제목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개정 시당」

1. 지난 5~10월간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시달하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감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글년말까지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할 으로써 2005. 1. 1부터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조례개정 일정과 개정현황을 2004. 12.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집 : 1. 2005년시행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개정안 1부.
 2.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개정내용 1부. 즐.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장(세종과장), 부산광역시장(세종과장), 대구광역시장(세종과장), 광주광역시장(세종과장), 인천광역시장(세종과장), 강원도지사(세종과장), 대전광역시지사(세종과장), 충청북도지사(세종과장), 충청남도지사(세종과장), 경기도지사(세종과장), 경기도지사(세종과장), 경상북도지사(세종과장), 경상남도지사(세종과장), 경상남도지사(세종과장), 제주도지사(제주환경과장)

행정부서 주석 서기관 행정부서 주석 서기관

험조자

시행 세종과-2271 (2004. 10. 20.) 전수 세무환경과-10002 (2004. 11. 01.)

우 110-700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세종문화회관 행정자치부 지방 / www.moph.go.kr

전화 3703-6057 /fax 3703-6202 / moph@moph.go.kr / 공개

○○도○○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

○○도○○시·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정안
<u><신 설></u>	<p><u>제15조의3(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u></p> <p><u>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u></p> <p><u>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2005. 1. 27.

담당자	담당	과장	결재
1500	1500	1500	1500

1. 조례명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05. 1. 6~2005. 1. 25(20일간)
 3. 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4.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5. 조례개정안 요목
 - 가. 행정자치부(세제과)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허가 : 2005.1.3
 - 나. 조례안 제27조의2 신설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 제천지역에 LNG도입 대비 세제 정비 -
- 끝.

입 법 예 고

제천시 공고 제 2005 - 14 호

제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6.

제 천 시 장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례명 :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도시가스도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공급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 주요개정내용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함 (제27조의2 신설)

□ 의견제출

이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월 25일까지 제천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번호 전화640-5261, FAX 640-525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준칙안】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C 일등 제천"



제천시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세장과장)
(경유)

제목 한국가스공사 지방세 감면 허가 신청

1. 한국가스공사의 충북권 천연가스(LNG)주배관건설공사에 따른 우리시 관내 시민들에게 가스수요 수혜기회를 부여하고
2. 지역개발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한국가스 공사 주배관설치공사에 대하여 지방세부담경감을 통한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3.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불임과 같이 지방세(재산세) 감면조례를 개정 코자 허가를 요청하오니 허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제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2.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제천시장

★지방세무주사보 박영태	세세담당	최석영	세장과장	권서규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부시장	한운석	시장11/11 임태영				
협조자	도세담당	박문수	의회법무담당최석영			

시행 세정과-16183 (2004.11.12.) 접수 ()
 우 390-701 충북 제천시 시청길15(천남동 12-2) / <http://www.okjc.net>
 전화 043)640-5253 /전송 043)640-5259 / test@okjc.net / 공개

충청북도 제천시세감면조례 제 호

충청북도제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제천시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7조의2(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7조의2(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감면조례개정허가

- 1. 충청북도 세무회계과-16987(2004. 11. 3)호와 관련입니다.
- 2. 위호에 의하여 충청북도, 제천시, 충주시, 음성군에서 제출한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허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허가하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세감면조례개정허가(안)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충청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주시장(세정과장), 음성군수(재무과장), 제천시장(세정과장)

행정주사

남성호

서기관

김주이

세제과장

12/31
류금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2915 (2005.01.03.) 접수 세정과-48 (2005.01.03.)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지방 / www.mogaha.go.kr
세제국

전화 3703-5057 / 전송 3703-5552 / manstar@mogaha.go.kr / 공개

제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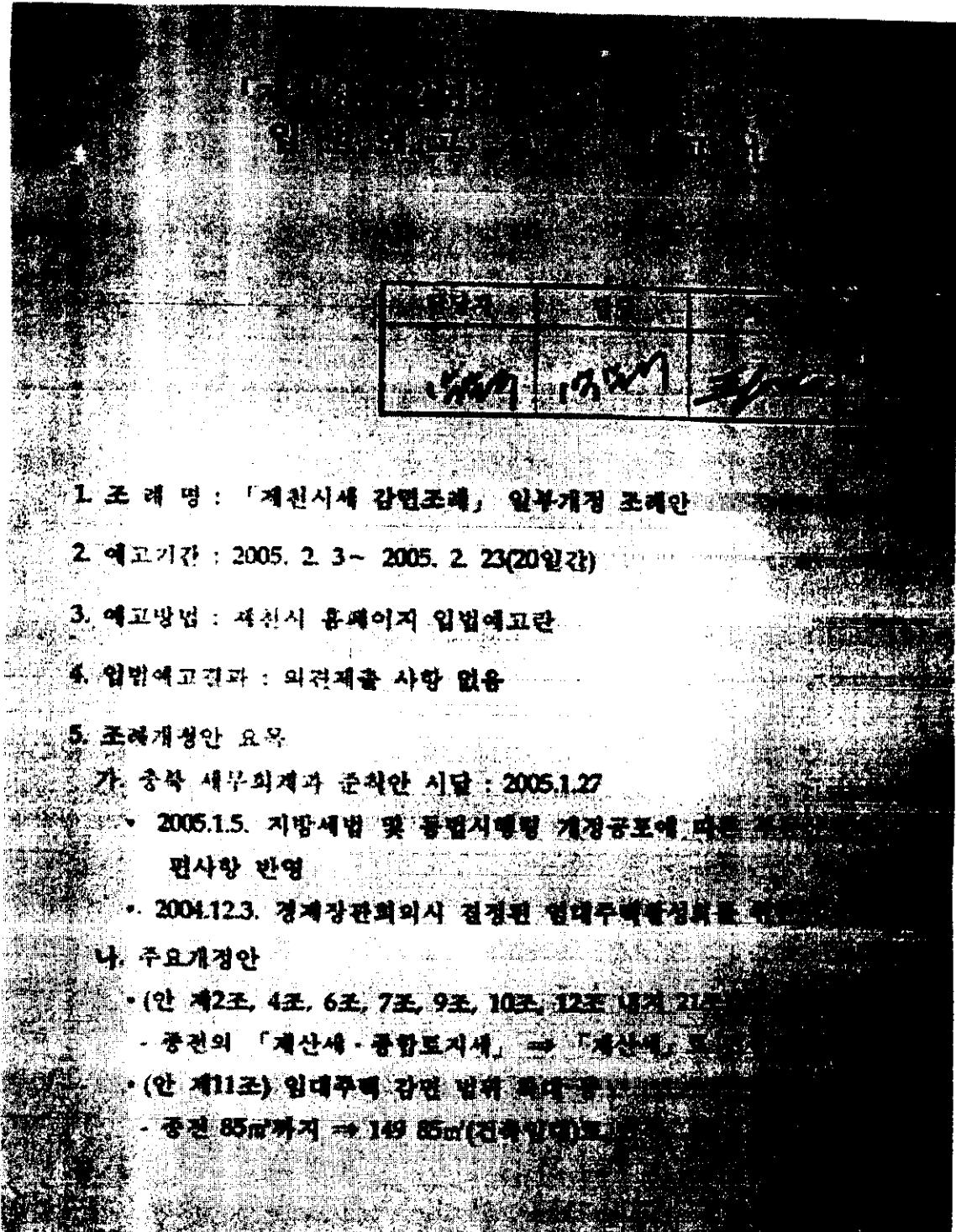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2(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u> <u>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u> <u>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u> <u>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u>



1. 조례명 : 「계천시세 강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05. 2. 3 ~ 2005. 2. 23(20일간)

3. 예고방법 : 계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4.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5. 조례개정안 요목

가. 충북 세무회계과 준칙안 시일 : 2005.1.27

- 2005.1.5. 지방세법 및 동별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른 세무회계과 편사항 반영
- 2004.12.3. 경제장관회의사 결정된 임대주택 성과 평가 기준

나. 주요개정안

- (안 제2조, 4조, 6조, 7조, 9조, 10조, 12조) 내용 21개 항
- 충전의 「재산세·종합토지세」 → 「재산세」로 표기
- (안 제11조) 임대주택 강면 면적 85m² 까지
- 충전 85m² 까지 → 149 85m²(전용면적)

입법예고

제천시 공고 제 2005 - 57 호

제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2. 3.

제천시장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례명 :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하여 지방세감면 확대에 따른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2005.1.5.)됨에 따라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조문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조례를 지방세법에 일치시키기 위함.

□ 주요개정내용

가.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중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주택이 별도 과세대상으로 됨에 따른 자구 수정 및 관련법률 중 명칭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여 일치시킴.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1조)

나.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확대에 따른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2005.1.5.)됨에 따라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함 (제11조)

* 감면대상 물건 확대 : 최초분양 ⇒ 최초분양 및 매입

* 감면대상자 확대 : 임대사업자 감면 ⇒ 임대사업자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면율 확대 : 40㎡이하 및 60㎡ 현행과 같음.

85㎡이하 초과누진세율 적용배제 ⇒ 149㎡이하 25% 감면

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감면규정을 행정자치부의 표준
안대로 세부적으로 개정함.(제22조)

□ 의견제출

이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
년 2월 23 일까지 제천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번호 전화640-5261, FAX 640-525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00도00시 · 군세감면조례표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00시(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 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2003. 5. 7,

2003. 6.18, 2004. 10.28 개정)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2003.10.16. 개정)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

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2003.10.16. 개정)

제4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3.10.16. 개정)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3.10.16. 개정)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2003.10.16. 개정)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00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2003.10.16. 개정)
-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

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을 25%내에서 조정가능

-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005. 1. 25개정)

*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을 25%내에서 조정가능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2004. 3.25. 개정)

③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3.10.16. 개정)

제13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2003. 10. 16개정)

제1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2003.10.16. 개정, 2005. 1. 25개정)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의1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2003.10.16. 개정)

제15조의2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3.10.16. 개정)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5조의3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 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 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04. 12. 21신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6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7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00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00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00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00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003.10.16. 전문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은 15년의 범위안에서, 동조제

12항은 10년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율 조정 가능

제2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0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00 농공단지
2. 00 농공단지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03.10.16. 개정)
-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2003.10.16. 개정)

※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 안에서 자율 결정함.

제26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당해 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감면여부 결정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3.10.16. 개정)

제28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2005. 1. 25개정)

제7장 보 칙

제00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00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00도00시·군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세를 감면받은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00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대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2004.10.28 신설)

제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 11. 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10. 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15조의 3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1. 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서식)

○○시(군) 세 감 면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초 세액	감면 세액
감면사유	00도00시(군)세감면조례 제00조			
00도00시(군)세감면조례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 시장(군수)귀하				
구비서류				수 수료
				없 음

00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00시군세감면조례 중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을 25%내에서 조정가능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을 25%내에서 조정가능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년간 1,000분의 3”을 “3년간 1,000분의 1.5”로 한다.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중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를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로 한다.

제2항중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로 하고, “주거용건축물”을 “주택”으로 한다.

제00조(진주시 초전·장재공업지역에 대한 감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를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공공 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용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을 25% 내에서 조정가능</p>

현 행	개 정 안
	<p>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을 25% 내에서 조정가능</p>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u>지방세법</u>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u>3년간 1,000분의 3</u> 을 적용한다.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u>부가가치세법</u> 」 ----- 「 <u>지방세법</u> 」 ----- <u>3년간 1,000분의 1.5를</u> -----.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1,000분의 1</u> 로 한다. ② -----	재산세의 세율은 「 <u>지방세법</u> 」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u>1,000분의 0.7</u> 로 한다. ② -----
주거용 건축물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u>1,000분의 3</u> 으로 한다. 다만, ----- 주거용 건축물 -----	주택 「 <u>지방세법</u> 」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u>1,000분의 2</u> 로 한다. 다만, ----- 주택 -----

현 행	개 정 안
제00조(진주시 초전·장재공업지역에 대한 감면) -----	제00조(진주시 초전·장재공업지역에 대한 감면)-----
<u>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u>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조문 개정

□ 조문개정의 필요성

-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통합과세 등 감면조례표준안 내용중 일부 조문수정 필요
 - * 개정 조문을 시도에 송부하여 해당 자치단체 조례개정에 참고
 - * 임대주택 감면율 조정내용 포함

□ 개정조문 수정내용 (뒷면)

00시군세 감면조례표준안

조항	현 행	개 정
제2조1항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4조	• 주거용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재산세
제5조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6조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 삭제
제7조	• 재산세·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9조1항	• 재산세·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9조1항2호	• 건축물	• 건축물 및 주택
제9조2항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 삭제
제10조1항, 2항	•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 건축물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 주택 • 재산세
제11조	• 건설 및 매입임대 동조에 규정 -40m ² 이하 : 재산세, 종토세 면제 -40~60m ² : 재산세 50%, 종토세 0.3% -60~85m ² : 종토세 0.3%	• 건설임대(1항)과 매입임대(2항) 별도규정 -건설임대 : 60~149m ² 까지 감면 확대(재산세 25% 감면) -매입임대 : 60~85m ² 까지 감면 확대(재산세 25% 감면)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도시계획 세 면제 • 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 세부규정은 시행공문 참고
제12조1항, 2항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 삭제
제12조3항	•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

조항	현 행	개 정
제13조	• 주민공동체 경작농지 농업소득세 감면조항	• 조문전체 삭제(농업소득세 과세 중단에 따른 조치)
제14조	• 3년간 1,000분의 3	• 3년간 1,000분의 1.5
제15조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 재산세의
제15조의1	• 지방세법시행령194조의14제2항 • 재산세·종합토지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 • 재산세
제15조의2	•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제10조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제9조
제16조1항	•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 재산세의
제16조2항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경감	• 삭제
제17조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 재산세 • 재산세의
제18조	• 재산세·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19조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 삭제
제20조	• 재산세·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21조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 재산세의
제22조	• 재산세·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23조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24조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 삭제
제25조1항, 2항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26조	• 종합토지세와 종합토지세	• 재산세

조항	현 행	개 정
제28조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제28조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 • 주거용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 • 주택
제00조(경기도 도시형 공장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제00조(동해시 북평지 방산단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4조의9제2항제4호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3조제2항제4호 • 재산세
제00조(강원,제주 시군 별장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1목 및 제234조의16제1항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동호나목을 적용
제00조(강원,경북폐광 지역진흥지구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 삭제 • 재산세
제00조(중부,영남,호남 복합화물터미널 등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제00조(전북 생물벤처 기업지원센터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종합토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제00조(전남 해남화원 관광단지지원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

조항	현 행	개 정
제00조(전남 광양시 테 이 너 항 배 후 지 지원 감면)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 삭제
제00조(경북 경산시 임당택지개발지구내 토지 감면)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 재산세의
제00조(진주시 초전·장재 공업지역 감면)	•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제00조(경북 안동시 문화관광단지지원 감면)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 종합토지세	• 삭제 • 재산세 • 재산세 • 재산세
제00조(경남 양산시 도시 철도 건설 사업 지원 감면)	• 재산세, 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00조(제주 서귀포 토평지구 공장지원 감면)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재산세
제00조(제주 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 사업 지원 감면)	• 주거용 건축물 • 재산세·종합토지세	• 주택 • 재산세
보칙제00조(직접 사용 의의미)	• 종합토지세	•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보칙제00조(종합토지세의 경감을 적용)	•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감을 적용 • 종합토지세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 토지에 대한 재산세